

제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8. 31. 양순경의원 외 4인
- 나. 회부일자 : 2007. 8. 31.
- 다. 상정일자 : 2007. 9. 6.(제13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양순경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의 전문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.(안 제1조,제2조)

##### ○ 제1조(목적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7조를 ⇒ 제42조로 개정

##### ○ 제2조(범위)

- 3호의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⇒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상학)

- 제천시의회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2007. 5. 11일 「지방자치법」 법조문 일부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문을 일치 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제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5. 소 수 의 견

“ 없 음 ”

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